진 양 호 수 질 관 리 공 동 협 의 회 규 약 안

(의안번호 제492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8. 7. 30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7. 15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7. 18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7. 29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중 · 서부 경남의 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한 인근 시 · 군간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가. 협의회 위원은 진주, 통영, 사천시장, 고성, 산청, 함양, 합천군수 및 수자원공사 남강댐건설사업단장으로 함.(안 제3조)

나. 진양호 수질보전 및 개선,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지원,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함.(안 제6조)

다.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단체에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함.(안 제10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중 · 서부 경남의 상수원인 진양호의 수질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사용 시 · 군간의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상수원 보호에 대처해야 하겠으며, 공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8. 7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